

건설관련 법률상담 ①

이원기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

건으로 처분되면 회생계획의 수행은 처음부터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M&A없이 이루어지는 회생계획은 통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회생계획의 수행기간이 길어지는데 그에 따라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경영이 어려워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대외적 신용도나 내부적으로 임직원들의 사기를 회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기업 회생 10

1.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회생기업의 대표는 관리인이며 관리인이 법원의 감독 하에 회생계획을 수행한다.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회생기업의 회생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회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M&A가 없는 회생계획인 경우 외부자금 유입이 없이 회생계획대로 영업에서 창출되는 현금이나 자산 등의 매각자금만으로 회생기업이 필요한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조달하고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면 회생계획안 작성 당시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영입이 부진하거나 수익구조가 악화된다든가, 계획한 자산 등의 매각이 지체되거나 계획보다 불리한 조

이점에서도 회생계획에 있어 M&A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바, M&A가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M&A를 적극 추진하여 성사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관리인이 회생기업의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기를 원하여 M&A에 소극적인 경우가 없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들이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회생계획의 변경

일단 인가된 회생계획이라도 회생계획 수행 중 회생계획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된 때에는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는데 회생계획의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M&A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M&A는 통상 중간사 선정, 자체 실사, 투자자 물색, 매각 공고, 인수의향서 접수, IM(설명자료)발송, 인수의향서

제출자 간이 실사, 인수 제안서 접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우선협상 대상자의 정밀 실사, 본계약 체결, 법원의 허가, 채권자와의 협상, 변경회생계획안 제출, 인수대금 납입,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결의 및 법원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또는 지분권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회생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생계획의 변경은 법원의 변경 결정으로 끝나게 되나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회생계획의 변경이라면 회생계획안의 제출에 있어서와 같이 최종적으로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것과 같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의 변경은 M&A라든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해관계인 특히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회생기업의 자금사정이 예상보다 어려워져 회생계획대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이런 경우 결국 회생절차의 폐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가.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의 수행이 완료되었거나 회생계획의 수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을 하게 된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되고 회생기업은 온전한 정상회사가 되어 주식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대표자가 되고 이사회 주주총회가 상법상의 기능을 회복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회생기업의 정상적 경영을 위하여는 회생절차의 종결이 필요한 바,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되는 예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M&A에 의한 경우 유입된 자금으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의 전액 또는 대부분의 액을 변제함으로써 조기에 종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절차의 폐지란 회생기업의 회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과는 달리 회생기업의 회생이 어려워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시키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회생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¹⁾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의 회생절차 폐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필요적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바, 결국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파산절차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회생기업은 파산자가 되며 회생채권자는 파산채권자가 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을 배당받게 되는데 다만 회생담보권자

1)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벽산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고 파산선고를 한 바 있다.

는 회생절차에서와는 달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으로써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러한 회생절차 폐지의 일련의 효과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담보권자에게 특히 유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생기업의 회생가망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경우 회생담보권자로서는 적극적으로 회생절차의 폐지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4. 마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종종 동원되는 수단으로 고금리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조달하는 일, 친구나 지인 친지 또는 이들이 소개하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일,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돈을 끌어 모으는 일이 있는데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이러한 수단으로 기업이 회생한 경우는 없었으며 회생하기는커녕 사채업자의 불법적이거나 강압적인 채권 추심에 시달리고, 신용도는 급락하여 회복 불능이 되며,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다른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발생시켜 심하면 형사 처벌(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유사수신행위의 규

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까지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자산이나 영업의 일부 매각 등 물적 구조조정인데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나 영업을 있는 경우가 드물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매각이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매각 하더라도 사후에 사해행위로 몰려 취소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이 있어 이 역시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회생절차는 많은 경우에 이른바 Fast track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기업의 회생 확률을 높이고 또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회생기업 이해관계자 간 공평을 기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회생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에는 다른 수단보다 회생절차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원기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동대학원 졸업
한국장기신용은행 근무
제43회 사법시험
법무법인 세화

(현) 법무법인 유일
서울대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자본시장통합법, B법률, 기업구조조정의 이론과 실무) 수료
서울지방법원사회 조세법, 통합도산법 과정 등 수료

법무법인 유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37 현대타워 6층 (135-877)
대표번호 02)563-1588, 팩스02)563-8181